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민연금사업 관리운영비 전액의 국가 부담 〉
■ 김성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334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국민연금사업 관리운영비 전액의 국가 부담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 기관 의견	9

I. 개요

1. 김성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33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성회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7. 8.
- (3) 회 부 일 : 2025. 7.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지원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부터는 총 관리운영비의 약 2%에 불과한 100억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음.

국민연금사업은 본래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는 국가사무일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해 사회후생을 증가시키고,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복지적 책무를 일정 부분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운영비는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고지원을 통해

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부분 해소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7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민연금사업 관리운영비 전액의 국가 부담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7조).

현행	개정안
제87조(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u>전부 또는 일부를</u> 부담한다.	제87조(국고 부담) ----- ----- ----- <u>전부</u>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고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편성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하 “국민연금사업 관리운영비”라 한다)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현행법에 따라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며,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¹⁾

□ ‘국민연금사업 관리운영비’는 국민연금공단의 인건비, 기타경비 및 정보화운영비를 합산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의 통합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편성된 ‘국민연금 징수위탁사업비’로 구성됨.

-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와 국민연금 징수위탁사업비의 계획액은 각각 5,844억 9,000만원과 943억 2,700만원으로, 이를 합한 국민연금사업 관리운영비는 총 6,788억 1,700만원임.

1) 「국민연금법」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제24조(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 최근 5년간 국민연금사업 관리운영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민연금 징수위탁 사업비
		소계	인건비	기타경비	정보화 운영비	
'25 계획	678,817	584,490	448,790	104,098	31,602	94,327
'24 결산	641,802	548,622	423,233	102,395	22,994	93,180
'23 결산	635,699	543,811	419,981	101,051	22,779	91,888
'22 결산	624,843	536,285	412,260	99,981	24,044	88,558
'21 결산	614,280	526,571	405,326	97,804	23,441	87,709

자료: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요건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등 사실상
‘전 국민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의 정책수단이고,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어주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
에 대한 일반회계의 지원을 선제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²⁾

□ 그러나, 국가가 국민연금사업 관리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려는 목적
에서 일반회계에 편성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은 2025년 기
준 100억원에 불과하여, 전체 국민연금사업 관리운영비(계획액) 대
비 일반회계 지원율은 약 1.47% 수준으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2)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사업 관리운영비 전액을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연금기
금 고갈 시점이 1년가량 늦추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음(^{현행}2065년 → 일반회계 전액 부담^{2066년}).

한다는 지적이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심사 시에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왔음.

-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나, 1992년부터는 국민연금기금지출계획으로 수립하되 그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부담하여왔는데,

일반회계 지원율은 2007년까지 38~66.7% 수준이었으나, 2008년과 2009년에는 5%로 급감하였고, 2010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는 매년 100억원(정액)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그 지원율은 2025년도 계획액 기준 약 1.71%임.

- (국민연금 징수위탁사업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통합 담당하게 되면서 당시 각 기관으로부터 전환 배치된 인력 비율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재정(1,512명, 59.5%), 국민연금기금(712명, 28.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168명, 6.6%) 및 고용보험기금(149명, 5.9%)이 그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의 분담액은 2025년도 계획액 기준 931억 8,000만원임.

<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율 관련 국회 지적사항 >

- ('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안정적인 국민연금제도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 확대 필요(제도개선 요구)
- ('24년도 국정감사)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필요
- ('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률을 10% 수준으로 확대 필요

자료: 각 연도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및 예·결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다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는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사업 관리운영비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가(국방부장관)가 직접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군인연금 외에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각각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설립하여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³⁾

국가가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각각 마련되어 있지만,⁴⁾ 그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예산은 편성되고 있지 않음.

□ 한편, 보건복지부가 「국가재정법」 제28조⁵⁾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에 반영된 국민연금사업 관리운영비의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국민연금사업 관리운영비가 연평균 약 8,1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3) 「군인연금법」

제4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공무원연금법」

제7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4) 「공무원연금법」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③ 공단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국고 보조) 국가가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국가재정법」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사업 관리운영비 전망: 2026~2030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국민연금사업 관리운영비	730,837	769,621	814,667	862,701	905,675	5.5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632,105	669,723	709,729	752,373	789,580	5.7
국민연금 징수위탁사업비	98,732	99,898	104,938	110,328	116,095	4.1

자료: 보건복지부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매년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 소득세’의 총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53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사업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며, 국민연금공단은 국가사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⁶⁾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급격한 재정부담(2026년 기준 약 7,308억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 (기획재정부) 현행 유지

- 기획재정부는 자체수입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관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른 4대 사회보험의 경우 국가가 관리·운영비 ‘전부’를 부담하는 사례는 없으며,⁷⁾ 국민연금 기금 관리·운영비는 기금운용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0.05%*)으로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 기금의 관리·운영비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민간투자펀드의 경우 약 0.2% 수준(추정)

문 의 처

02)6788-5506

6) 「국민연금법」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제24조(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7) 고용보험은 지원하고 있지 아니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